



유형별 신고동영상

직장인!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



근로소득자 신고안내



이런경우 신고 해야합니다.

근로소득만 있는 경우



1.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
2. 둘 이상의 회사로 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

근로소득 + 사업소득



1.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
2.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영업활동(3.3% 원천징수)

근로소득 + 기타소득



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인 강연료, 원고료, 경품당첨 등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한 경우

근로소득 + 금융소득



이자,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

이렇게 신고하면 됩니다 (신고기간 26.5.1.~ 6.1.)

홈택스(인터넷)

대상 : 신고대상자 모두
 방법 : hometax 접속 > 로그인 > 세금신고 > 종합소득세신고 > 신고유형에 맞는 정기신고
 * 신고유형은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



손택스(모바일)

대상 : 모두채움 대상자
 방법 : 손택스 접속 > 로그인 > 전체메뉴 > 세금신고 > 종합소득세 신고



1544-9944(ARS)

대상 : 모두채움 대상자
 방법 : 1544-9944 > 2번 > 1번 > 개별인증번호(8자리)# >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# > 계좌 확인



집이나 사무실에서 편하게 전자신고하고 최대 1만원 세액공제 받으세요